휴학

종류 및 신청 방법

[통합정보시스템-휴·복학 신청] 메뉴에서 직접 신청하고, 제출서류가 있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에 첨부파일 업로드 기능을 활용하여 제출

※ 통합정보시스템에 첨부파일 업로드가 불가능한 경우: 학과(부)사무실에 직접 제출 창업휴학은 휴학원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산학협력단 창업지원부(GP806)에 (☎950-2378) 제출 및 상담 필수

※ 휴학원 및 관련서류는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(통합정보시스템 신청 불가)

통합정보시스템 바로가기

구분 신청기한제출서류

일반휴학수업일수 4분의 2 이내 없음

질병휴학수업일수 4분의 3 이내 4주 이상 진단서 1부

육아휴학수업일수 4분의 3 이내 임신, 출산 및 육아 등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

(단,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)

군 입대휴학 수시 군입영통지서 사본 1 부

(입대 후는 군복무확인서)

창업휴학수업일수 4분의 3 이내 (필수)사업자등록증 사본

(필수)창업휴학 신청원 창업휴학 신청원, (필수)창업휴학 사업계획서 창업휴학 사업계획서 (해당자)성적증명서, (해당자)창업동아리증명서

(해당자)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

기간

일반휴학

학사과정: 6학기(약학대학은 8학기, 예과과정 3학기) 이내

※ 편입자: 3학기(단, 약학대학 편입자 6학기) 이내

석사과정 : 4학기(법학전문대학원 6학기) 이내

박사과정 : 6학기 이내

석·박사통합과정: 8학기 이내(다만, 복합학위과정은 12학기 이내) 질병휴학, 육아휴학, 창업휴학은 각 4학기 간 추가로 휴학 가능

질병휴학은 한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

육아휴학은 자녀당 4학기 휴학 가능

유의사항

가.군입대 휴학 관련

재학 중인 학생으로 입대예정일이 수업일수 3/4선 이후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, 당해학기 수업일수 3/4선 이전에 입영통지서로 휴학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당해학기는 군입대 휴학이됨

다만, 수업일수 3/4선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학기 휴학신청이 불가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선시험 등을 통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후 휴학하여야 함

일반휴학 후 군휴학 시 입영일자가 수업일수 3/4선 이전이면 해당 학기는 군휴학 처리되며, 입영일자가 3/4이후면 해당 학기는 일반휴학 처리됨. 이 경우, 군휴학은 다음 학기부터 적용 된

군복무로 인한 휴학인정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한하며, 의무복무 기간 이후에 개인적인 사정

으로 인해 부사관 등으로 추가 복무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군휴학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, 군 제대 복학 신청 후 일반휴학을 추가로 신청해야 함

나.입학 후 첫학기는 휴학할 수 없음. 단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.

군입대 휴학, 질병 휴학, 편입생 및 재입학생, 대학원생(연계과정 및 전문대학원생 제외),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

다.도전장학생은 장학생 선발 후 반드시 등록을 필하고 휴학원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등록 휴학시 장학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됨(2013학번까지 해당됨)

라.창업휴학관련

창업휴학은 제출 서류의 1차 검토 후 위원회를 통해 휴학의 여부가 결정되오니 서류 제출은 위원회 일정(최소 2주 소요)을 고려하여 제출하기 바람

대학원생 창업휴학의 경우, 별도의 자격요건 안내를 위해 상담 전화 요망(☎950-2378)

창업휴학은 재학 중에만 신청 가능하므로 휴학생이 창업휴학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학기간 내에 복학 후 신청 가능함

※관련근거 : 학칙 제26조(휴학) 및 제27조(복학), 휴·복학 및 등록 업무 처리 지침, 경북대학 교 창업교육학사제도 운영지침 제2장 창업휴학

복학

종류 및 신청 방법

[통합정보시스템-휴·복학 신청] 메뉴에서 직접 신청하고, 제출서류가 있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에 첨부파일 업로드 기능을 활용하여 제출

※ 통합정보시스템에 첨부파일 업로드가 불가능한 경우: 학과(부)사무실에 직접 제출 통합정보시스템 바로가기

구분 신청기한제출서류

복학 휴학 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 후 시작되는 다음 학기의 개강일 전(복학기간) 없음 군제대 복학 휴학 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 후 시작되는 다음 학기의 개강일 전(복학기 간) 병적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 군 전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귀향조치귀향즉시 대학에 신고해야 하며 일반휴학 또는 복학해야 함 귀향증 유의사항

가.군제대 복학은 전역 후 1년(2개 학기)이내에 복학해야 함

예1)2019년 11월(2019학년도 2학기)에 제대한 경우, 2020학년도 2학기(복학기간)에는 반드시 복학해야 함

예2)2020년 3월(2020학년도 1학기)에 제대한 경우, 2021학년도 1학기(복학기간)에는 반드시 복학해야 함

※ 학기구분 제1학기 :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, 제2학기 :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

* 관련근거 : 학칙 제26조(휴학) 및 제27조(복학), 휴·복학 및 등록 업무 처리 지침

재입학

신청방법

대상 : 퇴학 및 제적된 자 (단 유급제적,학사경고제적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자) 선발방법 :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한하여 12~1월과 6~7월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선발 유의사항

- 가. 징계 및 재학연한 초과로 인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음
- 나. 고등교육법시행령 부칙 제19조(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)에 해당하는 자 중 개전의 정이 인정되는 자는 재입학 허가 가능
- 다. 재입학 이전에 일반휴학 사용학기를 다 사용한 경우, 재입학 후에 일반휴학을 신청 할 수 없음

※ 관련근거 : 학칙 제24조(재입학)

자퇴

시기 : 본인이 자퇴하고자 할 때

신청방법

[통합정보시스템-자퇴 신청] 메뉴에서 신청 및 자퇴원을 출력하여 해당 학과 사무실로 제출(일 반대학원생은 학사과로 제출)

제출서류

대학(학부): 자퇴원1부, 통장사본 1부(등록금 환불 대상자)

대학원: 자퇴원1부, 통장사본 1부(등록금 환불 대상자)

* 자퇴원 양식 학부용 일반대학원용 전문·특수대학원용

제적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.

-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
- 휴학 허가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
- 이중학적 보유자
- 학사경고 연속 3회자
-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
- 학사과정의 의학과·치의학과·수의학과 및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학생 중 유급 3회에 해당하는 자
- 사망한 자
- ※ 관련근거 : 학칙 제28조(자퇴) 및 제29조(제적)

졸업요건

등록학기가 8학기 이상인 재학생(단, 조기졸업은 6학기 이상부터 가능)

소속 학과(부) 및 학번별로 해당 이수학점(졸업/전공/교양/복수전공/연계전공 등) 취득자

전공, 교양 및 교직 등 해당 필수과목을 이수한 자

성적 : 평점평균 1.7 이상(4.3만점,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은 F학점 포함)

단, 사범대학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1.9 이상, 약학과는 2.0 이상, 경상대학경영학부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2.0 이상)

졸업자격 인정 요건을 충족한 자

조기졸업 신청자

졸업 학점

졸업학점 졸업학점 기준

2007학번 이전 학생 : 140학점 이상 2008학번 이후 학생 : 130학점 이상

전공학점 전공학점 기준

2011학번 이전 학생 : 35학점 이상 2012학번 이후 학생 : 45학점 이상 2018학번 이후 학생 : 51학점 이상

현장실습, 해외 어학연수 및 해외 인턴십 이수학점은 졸업을 위한 총 이수학점에는 포함되나, 졸업에 필요한 최소전공 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

공학(건축학)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학과(부)의 학생은 해당 프로그램의 규정을 따름 1998 ~ 2003학년도 신입생은 본전공, 복수전공, 부전공, 자유선택 및 교직 이수학점을 합해 70학점 이상이 되어야 함

(단, 건축·토목공학부 건축학전공, 의학과, 수의학과 학생, 학사편입생 및 간호학과 3학년 편입생은 제외)

2004 ~ 2007학년도 신입생은 본전공, 복수전공, 부전공, 자유선택 및 교직 이수학점을 합해 95학점 이상이 되어야 함

(단, 건축·토목공학부 건축학전공, 의학과, 수의학과 학생, 학사·일반편입생 및 간호학과 3학년 편입생은 제외)

인문대학, 사회과학대학 등 특정 대학 및 학과(부)의 경우 복수전공, 연계전공, 부전공 및 교 직과정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, 본전공 학점을 9~15학점 추가로 이수해야 하므로 반드시 해당 기준 확인

교양학점 교양학점 기준

2018학번~2022학번 학생은 24학점 이상 42학점 이하

2017학번 이전 학생, 2023학번 이후 학생은 30학점 이상 (단,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SDG교 양 3학점 이상 포함)

일반편입생, 외국인학생, 202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영역 구분없이 이수할 수 있음. 단, 졸업에 필요한 교양이수학점은 입학 당시 학칙 및 졸업자격인정규정을 따름

※ 현장실습, 해외 어학연수 및 해외 인턴십 이수학점은 졸업을 위한 총 이수학점에는 포함되 나, 졸업에 필요한 최소교양 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

조기 졸업

요건

본전공 및 복수전공 등의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

등록학기가 6학기 이상인 자(수업연한 최대 1년까지 단축 가능)

평점평균이 3.7이상인자(4.3만점,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은 F학점 포함)

졸업자격 인정 요건을 충족한 자

[조기졸업 신청서]를 제출한 자

신청 시기 및 장소

(조기졸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기) 종강 이전에 소속 학과와 상담 후 통합정보시스템-학사행정-졸업-졸업예정자관리-조기졸업신청 메뉴에서 신청

제줄 서류

통합정보시스템 조기졸업 신청시 성적증명서 첨부 필수

학사학위취득의 유예

학사학위취득의 유예란 ? 「경북대학교 학칙」제58조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의 신청으로 해당 학기 졸업 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학기 동안 졸업을 연기하는 것

*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졸업을 연기한다는 점에서 졸업자격인정요건을 미충족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'수료' 와는 다름

신청 자격

졸업학점 및 졸업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, 8학기(10학기*) 이상 이수한 자 *건축학부 건축학전공

현재 유예 중인 학생도 신청 가능, 조기졸업 신청자 및 기 수료자는 신청 불가

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적용 기간

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학기 단위로 2회까지 신청 가능

신청절차

선발공고 (학사공지사항/연 2회/1월,7월경)

신청 (통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신청)

선발 (졸업학점 및 졸업자격요건 확인 후 승인)

유의사항

수강신청을 할 수 있고, 수강신청을 할 경우 등록금은 수업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 적용,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시설사용료(등록금의 5%) 납부

※ 단, 계절수업 수강 시 계절수업 납입금 적용

등록금 및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,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직권 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학기로 추가 졸업 처리함

유예기간 중 휴학 또는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취소 할 수 없음

등록금 및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이후 유예신청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사망, 부상, 질병, 군입대 등의 사유로 유예지속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 가능

취소 후 다음 학기 졸업예정자로 처리함 (다만, 학기 개시 전 취소자는 당초 졸업 예정 학기로 추가 졸업 처리)

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취소 시 등록금 반환은 취소승인일자 기준으로 수업의 경과일수에 따라 반환금액이 감액 처리됨

유예자에 대하여 졸업예정증명서 및 재적(유예)증명서 발급 가능

학사학위취득 유예에 따른 등록금은 2회 구분하여 납부함

[수강자, 미수강자 공통] 시설사용료(등록금의 5%) 납부

[수강자] 차등납부기간에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 차액 추가 납부

졸업유보

졸업유보란?

교직과정 이수자 중 전공학과(본전공, 부전공, 복수전공 포함)의 졸업요건은 충족했으나 전공학과의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재학연한의 범위 내에서 초과학기를 이수하는 것

※ 학사학위취득유예와는 달리 반드시 1학점 이상 수강 신청을 해야 하며, 등록금은 수업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를 적용함